

2003.10.11(土)

檢 討 報 告 書
(第123回 臨時會)

達 城 郡 議 會
專 門 委 員 文 乙 姬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의사(전문의와 일반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업무수당을 각각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은 월 20만원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제1호 [별표1] 일반직의산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중 전문의 의료업무수당 “월 609,000원

이하”를 “월 909,000원이하”로 하고, 일반의 의료업무수당 “월 518,000원이하”를 “월 818,000원이하”로 하고, 구분란의 “갑지”를 “월수당 지급액”으로 하고, “을지”, “병지”사항은 삭제하고, “※급지의 구분”이하는 삭제하며

- 제2조제2호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중 제목을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내용 중 가급·나급 구분없이 각각 20만원씩 인상하고자 함.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181(2003.6.14) 및 대구광역시 총무12410-21127(2003.6.17)호에 의거 의료업무 종사 공무원(전문의,일반의)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코자 개정하는 것임.
- 인상금액 ⇒ 월 30만원
- 시행시기 ⇒ 2003. 7. 1이후부터
- 우리군 해당공무원(2명) ⇒ 보건소장, 5급의무직
- 전문의 ⇒ 보건소장 월 609,000원 ⇒ 월 909,000원
일반의 ⇒ 5급 의무직 월 518,000원 ⇒ 월 818,000원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안에 의거 군세감면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중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함.(안 제2조제2항)

4. 검토보고

- 본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달라는 국가보훈처, 광주광역시의 감면조례 개정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건의안대로 허가하고, 이에따른 감면개정안에 의거 개정코자함.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제반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

3) 주요내용

-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를 “보육료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이를 군수에 게 신고한다”(안 제5조제1항)

-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안 제7조)
- 종사자 관리 법령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추가 (안 제8조제6항)
- 종사자의 임면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 추가 (안 제11조제1항)
- 종사자의 임용연령, 정년, 전보 조항 삭제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14조)
- 종사자의 연가일수는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특별휴가 출산에 본인(90일 이내) 추가 (안 제15조제2항, 제15조제5항 별표2)
- 징계권자를 시설의장은 “군수”에서 “군수 또는 수탁자”로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임면권자”로 함 (안 제17조제1호, 제2호)

4. 검토보고

- 영유아보육법 규정 중 현실에 맞지않은 내용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개정하며, 또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사항을 삭제하므로서 영유아 건전육성에 기여코자 2003년도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5조(보육료) 개정은,
 - ┌ 현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가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함.
 - └ 개정 ⇒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군수에게 신고

- 개정조례안 제7조(위탁운영기간)
 - ┌ 우리군 : 공립2개소(옥포, 구지)
 - └ 2년 ⇒ 3년으로 개정

- 개정조례안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항
 - ┌ 현행 ⇒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
 - └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추가)을 준수

- 개정조례안 제11조(종사자의 임면)
 - 시설의장 ⇒ 군수임면
 - ※ 위탁운영시 ⇒ 수탁자가 임면, 군수보고

- 개정조례안 제12조(종사자의 임용연령,정년) 삭제는,
 - 보건복지부 아동65210-1332(2001.4.18) 및 행정자치부 운영 11250-1006(2000.12.28)호에 의거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임.

 - 그러나 공립어린이집은 달성군에서 영유아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시설투자설치한 보육시설로서, 이를 위탁운영함에 있어 임용연령 특히 정년을 삭제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공직자(행정,교육,법원,경찰,기타 등) 공기업, 사기업 등 모든 사업장은 정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적관리 및 일의 능률제고, 다변화와 급변하는 제반정세에 대한 대처 능력, 보다 높은 삶의 질, 나아가 국가발전 대계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봄.

따라서 국가장래의 근간인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14조(전보)

-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삭제

○ 개정조례안 제15조(휴가)

- 종사자의 연가일수는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함.

○ 개정조례안 제17조(징계권자)

┌ 시설장 ⇒ 군수
└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 개정하여 분리수거 제도의 조기정착을 실현하고자 함.

2)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3)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
- 감량 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 의무 이행 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 마련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 규정 신설

4.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조항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하며, 또한 법령상의 용어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
- 조례 제명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함.

-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 미비점 보완 및 용어변경

- 개정조례안 제6조
 - 미비점 보완 및 용어변경

- 개정조례안 제7조제1호
 - 7일 ⇒ 30일

동조례 제3호 신설

- 제1호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근거마련

-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은 범조항 변경으로 인함.

-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 제3항은 용어변경임.

동조 제5항, 제6항 신설

-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

- 개정조례안 제14조
 -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추가 지도점검

태풍 「매미」 피해자군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풍수해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조속한 복구를 지원코자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근거

-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3) 주요내용

- 사망자·실종자가 보유하던 재산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부상자가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피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건축물 또는 농지가 침수된 경우 피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피해자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24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가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부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사망자·실종자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부상자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당해 피해자동차를 폐차(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4. 검토보고

-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경제적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및 대구광역시 세정 13400-20859(2003.9.30)호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감면대상

- 태풍 「매미」 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자
(피해사실이 확인되는자)

○ 세목별 감면내역

- 종합토지세
 - 사망자·실종자 보유재산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면제
 - 부상자 보유재산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100분의 50경감
 - 건축물, 농지 유실·매몰 ⇒ 피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농지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면제
 - 건축물, 농지 침수 ⇒ 피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농지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100분의 50경감
 - 피해자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 경우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
- 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24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가 유실·매몰·전과·반과 등 피해 ⇒ 당해 피해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 부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 침수피해 ⇒ 100분의 50경감

- 자동차세

- 사망자·실종자 소유 자동차 1대 → 2003년도 제2기분 면제
- 부상자 소유 자동차 1대 → 2003년도 제2기분 100분의 50 경감
- 자동차가 멸실·파손 ⇒ 당해 피해자동차를 폐차(2003년 12월 31일 이전폐차 한함)하는 경우 ⇒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면제

- 기타사항

- 적용시기 ⇒ 2003년 9월 12일부터 적용
- 이 동의안 시행이전 납부한 군세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 기납부세액은 환급함.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우리고장 출신 호국인물 「고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산 교육장으로서 비슬산 주변 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동상 및 기념관건립부지를 매입코자함.

2) 근 거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 매입대상토지 : 유가면 양리 287-1, 288-2,
산44-2번지 3,495㎡

4. 검토보고

○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 3필 3,495㎡ (1,057평)

┌	유가면 양리 287-1	1,067㎡(323평)
	" 288-2	2,226㎡(673평)
	" 산44-2	202㎡(61평)

- 2003년 당초예산 : 250,000천원

┌	부지매입비	150,000천원
	건립비	100,000천원

- 2003년 2회추경예산안 : 200,000천원(시비)

○ 부지위치·주변환경 등, 적정지인지 사전 답사하여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후 예상되는 기념관의 역사적 기록·자료 전시 및 건물관리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